> 화학물질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관한 지침

> > 2012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: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 리스크관리 연구위원회 에스텍 E엔C 김정훈
- 개정자: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- 제·개정 경과
- 2010년 11월 위험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2년 4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등 반영)
- 관련 규격 및 자료
-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6항, 시행규칙 제92조의7.
- Technische Regeln fuer Gefahrstoffe 555, 2009.
- Technische Regeln fuer Gefahrstoffe 400, 2009.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12년 6월 20일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화학물질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활용에 관한 지침

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비치 등)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(이하 "화학물질"이라 한다.)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게시하는 관리요령의 작성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하는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작업조건"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조건, 예를 들면 수작업공정 또는 로봇을 이용한 무인공정 등을 말한다.
  - (나) "작업물질"이라 함은 작업장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를 말한다.
  - (다) "노출농도"라 함은 작업상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작업물질의 가스상·입자상의 농도를 말한다.
  - (라) "노출시간"이라 함은 작업상 근로자가 작업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을 말한

X - 27 - 2012

다.

- (마) "작업공정별 관리요령"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6항에 따라 사업주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게시하여야 하는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, KOSHA GUIDE X-1-2011(리스크 관리의 용어 정의에 관한 지침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 4. 적용방법

- (1)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각각의 작업에 대해 리스크 수준 판정 시, 다음 각 호를 비교·검토하여 리스크 수준이 중간영역인 경우, 이 기술지침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 령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.
  - (가) 작업조건
  - (나) 작업물질
  - (다) 노출농도와 폭로시간
- (2) 화학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작성은 해당 작업에 대한 리스크 분석의 결과에 바탕을 둔다.

#### 5. 작업공정별 관리요령

#### 5.1 일반 사항

(1)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와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작업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.

#### X - 27 - 2012

- (2)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작업장소와 작업내용에 관련된 문서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시 화재, 폭발, 안전사고, 주변 환경, 건강장해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요구지시사항과 근로자의 행동규범이다.
- (3) 근로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한다.
- (4) 사업주는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작성을 산업안전보건전문가나 외부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(5)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- (가) 해당 작업장소의 특성
- (나) 화학물질과 관련된 법규, 규정 및 기술지침
- (다) 물질안전보건자료
- (라) 제조자가 제공하는 기술적인 정보 및 자료
- (6)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가장 최근의 정보와 리스크 평가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.
- (7)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근로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작업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특히, 한국어와 함께 해당 국가의 언어를 통해 이해 가능하도록 함이바람직하다.
- (8) 요구사항은 "해야만 한다", 금지사항은 "해서는 안된다"로 정확히 표현하여야 한다.
- (9)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양식은 근로자들이 사업장내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동일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법규와 기술지침에서 제시하는 기호와 그림문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.(참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-14호, 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2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,

X - 27 - 2012

시행규칙별표 2, 시행규칙별표 3, 시행규칙별표 4)

- (10)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견본 또는 작성도구 등을 통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야 한다.
- (11) 다량의 화학물질(페인트작업장, 창고 또는 실험실 등)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물질별로 각각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. 유사한 리스크와 방호조치를 갖는 그룹으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. 표준화된 작업공정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.

#### 5.2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내용

화학물질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(예시는 별지서식 2 참조)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(1) 작업장과 작업활동

사업장, 작업장(장소) 및 작업활동(공정)의 명칭을 기입할 수 있다.

#### (2) 화학물질

- (가) 화학물질의 명칭은 근로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혼합물과 제품의 경우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다.
- (나) 혼합물의 경우, 화학물질(톨루엔, 메틸알콜 등)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.
- (다) 작업상 최초로 화학물질이 생성되거나 방출되었을 때(목재가공, 납땜, 용접 등)에는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명기하여야 한다.
- (라) 유해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문자는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.
- (3)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해위험

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한 리스크 분석결과가 반영될 수 있다.

X - 27 - 2012

- (가) 유해위험문구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(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, GHS)의 유해 위험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.
- (나) 작업장 및 작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작업장 및 작업활동의 특성과 근로자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기입하여야 한다.
- (4) 방호조치와 행동요령

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자신과 주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방호조치와 행동요령이 기술되어야 한다.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가) 안전보건관련규정
- (나)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, 관리적 방호조치
- (다) 개인보호구(종류와 사용방법)
- (5) 위험상황에서의 행동
- (가) 압력상승, 온도상승, 누출, 화재, 폭발 등과 같은 공정이상, 사고 및 비상사태에서 근로자, 특히 구조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 조치들이 기록되어야 한다.
- (나) 필요할 경우 다음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.
  - ① 적합소화제 및 부적합소화제
  - ② 흡수, 결합, 중화약제
  - ③ 추가적인 기술적 방호조치(비상정지 등)와 개인보호구
  - ④ 환경오염에 대비한 조치
- (다) 경보계획, 대피 및 구조계획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.

#### (6) 응급처치

- (가) 응급처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① 흡입 시
- ② 피부와 눈 접촉 시
- ③ 삼켰을 시
- ④ 화상과 동상 시
- (나) 현장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조치가 명기되어야 한다. 의사의 투입시기와 직접 해서는 아니되는 조치(행동)가 분명하게 기재되어야 한다.
- (다) 응급처치에 대한 사업장 내부규정이 다음의 항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.
- ① 응급처치함(기구)
- ② 응급처치직원
- ③ 비상연락처
- ④ 특별한 응급처치방법(해독제 비치 등)
- (7) 폐기물처리
  - (가) 폐기물(누출물질, 생산잔여물 또는 포장재료 등)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방호조 치와 행동요령이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기술되어야 한다.
    - ① 개인보호구
    - ② 폐기물처리 용기와 집결지

X - 27 - 2012

- ③ 흡수물질
- ④ 세척제 및 세척수단
- (나) 근로자의 직무가 폐기물처리과정일 때는 이를 위한 독립적인 작업공정별 관리요 령을 작성하여야만 한다.

#### 5.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활용

화학물질관련 정보들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 <별지서식 1>은 작업공 정별 관리요령 작성 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활용방법을 예시한다. 사업주는 사용된 정보들의 내용이 명확한지와 사업장을 위해 충분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#### 6. 교육

#### 6.1 일반사항

- (1) 사업주는 근로자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, 그 이후에 최소한 일 년에 한번 이상 작업장 또는 작업에 관련된 화학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대해 교육시켜야 한다.
- (2) 작업의 조건이 변경되거나, 다른 화학물질이 투입되거나 법규 등이 변경되었을 때,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.
- (3) 사업장 내의 근로자는 해당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.
- (4) 교육내용과 수준은 근로자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한다.

#### 6.2 시행

(1) 교육은 현장실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#### X - 27 - 2012

- (2) 제조업체로부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대한 견본 등을 일률적으로 제공받았다면 해당 작업과 적합한지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교육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유사한 리스크를 갖는 작업장과 작업활동에 대해 공통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.
- (4) 교육내용은 피교육자의 사전지식과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5) 교육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와 언어로 실행되어야 한다.
- (6) 사업주는 근로자가 교육과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.
- (7) 교육내용, 교육제목, 피교육자, 교육강사, 교육일자 등 필요사항은 문서에 기록하여 야 하며 기록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사용할 수 있다.
- (8) 근로자는 서명을 통해 교육 참여를 기록·보존한다.

X - 27 - 2012

#### <별지서식 1>

#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작성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방법(예시)

-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- 제품명
- 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- 화학물질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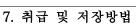
유해·위험물질의 명칭

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해·위험

#### 2. 유해성, 위험성

- 유해성, 위험성 분류
-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- 유해성,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,위험성

#### 15. 법적규제 현황



- 안전취급요령
- 안전한 저장 방법
-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-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- 적절한 공항적 관리
- 개인 보호구



방호조치, 행동요령

#### 5. 폭발, 화재시 대처방법

- 적절한 (및 부적절한) 소화제
-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-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## 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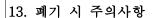
-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
-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- 정화 또는 제거방법



위험상황에서 행동

#### 4. 응급조치요령

- 눈에 들어갔을 때
- 피부에 접촉했을 때
- 흡입했을 때
- 삼켰을 때
-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

응급처치



폐기물처리

#### <별지서식 2>

#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(예시)

사업장명: 가나페인트 제정: 2010.1.1 유해위험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XX시 XX공단 개정: 2010. 7. 1 작업장과 작업활동 작업공정: 용기 세척작업(수작업) 작업장: 세척장(A동 뒤편) 외부공간에 마련된 지붕만 있는 작업장 수작언, 세척솔(빗자루)사용, 약30분소요 유해위험물질 물질명: 톨루엔(Toluene) CAS-No. 및 제조사: 108-88-3 / XX케미칼 유해위험신호어: 위험 관련법규, 기술지침: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6항, KOSHA Guide X-0-2010 제조자 기술자료: C3H8, NFPA 보건 2 화재 3 반응 0, 인화점 4℃, 자연발화 480℃, TWA 50ppm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해위험 리스크 수준 가동중지발생(IV) 강도 작언활동에 대한 유해위험 유해위험문구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사용공구(세정솔)에 의한 정전기 발생 점화원(기계적 충격, 정전기, 화기)에 의한 화재폭발위험 삼켜서 기도로 유인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주변작업자에 대한 물질의 비산위험 용기세정 시 작업자추락, 전도 위험 흡입하면 유해함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세정작업 시 지속적인 증기 흡입 세정작업 시 액체의 눈, 피부접촉 및 섭취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용기 교체 시 충돌위험 (호흡기)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되면 (중추신경계, 조혈계)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방호조치와 행동요령 50 ppm 인화점 폭발성 혼합기의 형성을 방지하도록 할 것.(환기) 옥외작업장으로 자동환기: 매시간당 10분 작업휴식 인화점 이하로 유지하고 액체나 증기의 누설을 막는다. 1회 세정작업에 사용용기(량) 지정: 초과사용금지 화기, 전기 스파크, 정전기 스파크, 가열, 고온체 주의 여름철 작업 시 직사광선 노출금지: 용기표면온도상승 적합한 안전보호구 및 보호장비를 착용, 사용할 것. 주변지역 화기엄금: 흡연장소 지정, 소화기 2대 이상 비치 취급후에는 몸을 깨끗히 씻을 것. 비금속제 세정솔 사용 개인보호구: 보안경, 방독마스크(직결형, 유기가스), 화학약품용 장갑, 안전화 용기내(제한공간) 작업시: 송기마스크 위험상황에서의 행동 온도 상승 시 --> 인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협의 후 작업증지 및 하절기에는 작업시간 변경필요 접촉/흡입/삼킴 시 --> 즉시 씻어내고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연락(필요 시 의사의 진찰 필요) 화재 발생 시 --> 주변의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소화(비상대응훈련 년1회 의무실시) 적합소화제: 분말, 이산화탄소, 일반적인 포말 부적합소화제: **소화전, 스프링쿨러** 폭발 시 --> 작업자가 정신을 잃을 수 있으므로 관리자 또는 주변 작업자의 지속적인 관찰 필요 누출시 --> 모래 또는 비가연성 흡수제로 수거, 대량일 땐 방유제를 축조, 화기엄금 비상사고시나리오에 따른 경보, 구조 및 대피: 안전보건관리자의 지휘 응급처치 흥인 시 피부와 눈 접촉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 눈의 경우, 많은 양의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호흡이 멈춘 경우, 인공호흡실시 오염된 의류, 신발 등은 즉시 제거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유지 오염부위를 다량의 물로 비누나 중성세제로 15분 이상 세척 필요 시 의사의 치료 필요 시 의사의 치료 삼켰을 때 화상과 동상 시 소방서나 의사에게 즉시 연락 소방서나 의사에게 즉시 연락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구토 나 투입금지 낮은 수준의 화상 시 화상용 연고 등을 도포 즉시 의사의 치료 즉시 의사의 치료 응급처치함 정문경비실 안전보건관리자, 경비원 응급처치직원 비상연락처 사내 032-259-0350 특별한 응급처치방법 화상용 연고: 실마진 폐기물처리 페유기용제(비활로겐족)에 포함되는 지정페기물로 전문페기물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함 액상의 페톨루엔은 전용의 용기에 저장, 보관하여야 함 페톨루엔이 흘러나오거나 무단방류하여서는 안됨